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. 10. 24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10월 10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0월 19일

라. 상정일자: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10. 2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임현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청년들에 대하여 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청년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4조제4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4조(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)에서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해 어학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과 같은 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.
- 검토 결과
 - 본 안건은 청년들에 대하여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는 4개의 자치구가 있으며, 우리 구는 해당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1인당 10만원을 상한으로 추계하여 지원할 예정임.
 - 한편,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, 본 개정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‘자격시험 응시료 지원’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된 사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35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0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청년들이 취업 시 필요한 자격시험(자격증 취득, 어학능력시험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)의 응시료를 지원하여 관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규정 신설
(안 제14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청년기본법」,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
- 나. 예산조치: 2024년도 예산 반영 예정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- 다. 협의사항
 - 1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 - 2) 인권영향평가: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
 - 3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4) 성별영향평가: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3. 8. 31. ~ 9. 20./ 20일 간) 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해 자격시험(자격증 취득, 어학능력시험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)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4조(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 해 자격시험(자격증 취득, 어학능력 시험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) 응시 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내역

- 자격시험 등 응시료 지원사업 소요재원: 51,700천원
 - 자격시험 등 응시료 지원: 50,000천원(100천원 × 500명)
 - 사무관리비(사업홍보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비용): 1,700천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

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,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,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자격시험 등 응시료 지원사업 소요예산: 51,700천원(1억원 미만)
 - ※ 1인당 10만원 이내, 총 500여명 지원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과 김태홍
연 락 처	02-3457-7217